

case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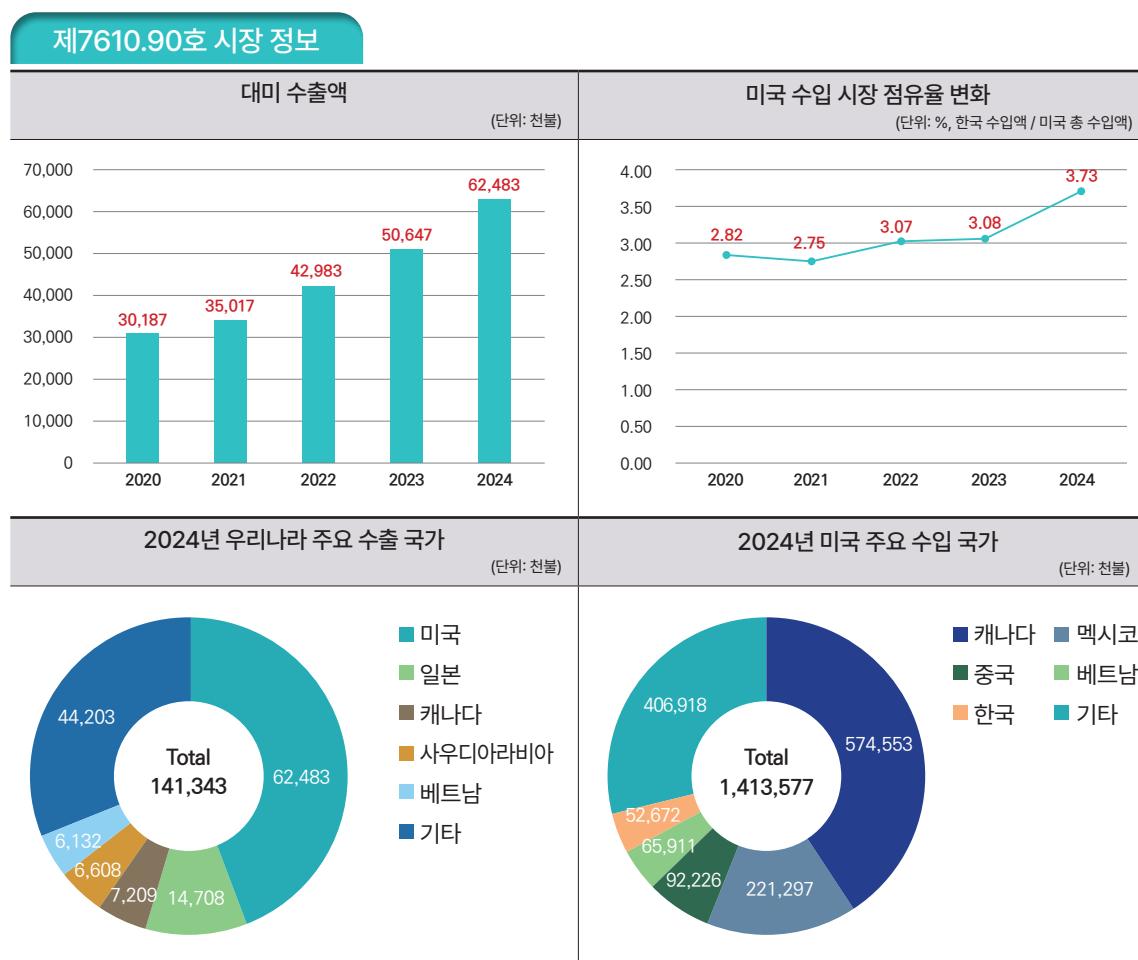
알루미늄 울타리 키트

요약

사례명	알루미늄 울타리 키트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사례번호	NY N334681 (2023.09.06.)
사실관계	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기타 알루미늄 부품이 멕시코로 수입되어, 절단, 편침, 라우팅, 용접 및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울타리 키트 제조
쟁점 및 판정	<p>①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</p> <p>멕시코 내에서 수행된 절단, 편침, 라우팅, 용접 및 조립 등의 공정을 통해 울타리 키트라는 새로운 상업적 상품이 탄생하였으므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며,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</p>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-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(19. U.S.C. § 1862)- Section 2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251)

I 품목개요

품목정보		
HS Code	제7610.90호	
세율	한국 기본세율	8%
	미국 기본세율	5.7%
	한-미 FTA 협정세율	0%
한-미 FTA 원산지결정기준	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	



❖ 자료: K-stat

II 판정사례

사례명 [알루미늄 울타리 키트]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사례번호 NY N334681 (2023.09.06.)

사실관계

요청자 Custom Home Goods, LLC

제품명 • 알루미늄 울타리 키트(소매용)

- 레일 탑 플랫(6'x5') 20개
- 라인 포스트(2"x2") 20개
- 게이트 포스트(2"x2") 2개

제품 구성 • 포스트 캡 22개
 • 보행자용 용접 게이트(4'x5') 1개
 • 나일론 게이트 경첩 2개
 • 게이트 잠금장치 1개

완제품 HTSUS • 7610.90.0080

제조공정



01
중국산 부품을
멕시코로 수입



02
울타리 키트 제조



03
미국 수출

- 상세공정
1.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, 알루미늄 포스트 캡, 알루미늄 게이트 및 연결용 하드웨어(나사, 힌지 등)를 멕시코로 수입
 2.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가공하여 레일 탑 플랫, 라인 포스트, 게이트 포스트 생산
 3. 구성품 조립 후 포장
 4. 미국으로 수출

쟁점사항

- ✓ 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관련 법령 및 분석



제232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

관련 법령 검토

- 제301조, 제232조, 제201조에 따른 무역구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,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함
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 - 이러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(totality of the evidence)하여 이루어짐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*, 681 F.2d 778 (CCPA 1982)

- 조립이 단순하거나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경우,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며, 이때, ①조립 공정의 성격, ②수행되는 개별 작업의 수와 종류, ③해당 조립 작업에 상당한 시간, 숙련도, 정밀도, 품질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음

❖ 참고 판정: *C.S.D. 80-111, C.S.D. 85-25, C.S.D. 89-110, C.S.D. 89-118, C.S.D. 90-51, and C.S.D. 90-97*

-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경미하여 부품의 고유한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

❖ 참고 판례: *Uniroyal, Inc. v. United States*, 3 CIT 220, 542 F. Supp. 1026 (1982), aff'd, 702 F.2d 1022 (Fed. Cir. 1983)

판정 결과

- 중국산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기타 알루미늄 부품이 멕시코로 수입되어, 절단, 편침, 라우팅, 용접 및 조립 등 복합적인 가공 공정을 거쳐 울타리 키트라는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
- 따라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멕시코이며, 멕시코산 제품은 제232조에 따른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됨

결론

- ✓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되며, 제232조에 따른 무역제재는 적용되지 않음

III 시사점

- 알루미늄 프로파일 및 기타 부품을 가공·조립하여 울타리 키트를 제조하는 경우, 새로운 상업적 상품을 창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질적 변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